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2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발전용·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2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4. 27.

(3) 회 부 일 : 2026. 4.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II. 검토의견

1. 발전용·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과 세율(제1조) ○ 과세물품의 세율(제2항제4호) -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475원/L -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340원/L - 등유 및 유사 대체유류: 90원/L - 중유 및 유사 대체유류: 17원/L - 석유가스 중 프로판: 20원/kg - 석유가스 중 부탄: 252원/kg - 천연가스: 12원/kg. 다만, <u>발전용</u> 외의 천연가스는 60원/kg -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90원/L - 유연탄: 46원/kg	☐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천연가스: 20원/kg. 다만, <u>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u> 외의 천연가스는 60원/kg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송재봉의원안 2026. 4. 27. 발의(의안번호 18626)

☐ 개정안은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20원/kg으로 조정하고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LNG 모두 프로판(LPG)과 동일한 수준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율은 12원/kg에서

20원/kg으로 인상되는 반면, 주택 난방용 LNG의 세율은 60원/kg에서 20원/kg으로 인하됨.

-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유류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행령상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 2026년 7월 현재 일반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10.2원/kg, 주택 난방용 LNG 등에 대해서는 42원/kg, 열병합 발전용 및 수소제조용 LNG에 대해서는 8.4원/kg이 과세되고 있음. 한편, LPG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4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세율 비교]

구분		「개별소비세법」 상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 탄력세율
휘발유		475원/L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경유		340원/L	
등유		90원/L	63원/L
중유		17원/L	-
석유가스 (LPG)	프로판	20원/kg	가정·상업용: 14원/kg
	부탄	252원/kg	275원/kg
			220원/kg (2021. 11. 12. ~ 2022. 4. 30.)
			193원/kg (2022. 5. 1. ~ 2022. 6. 30.)
			176.4원/kg (2022. 7. 1. ~ 2024. 6. 30.)
			193원/kg (2024. 7. 1. ~ 2024. 10. 31.)
			212원/kg (2024. 11. 1. ~ 2025. 4. 30.)
			234원/kg (2025. 5. 1. ~ 2025. 10. 31.)

구분		「개별소비세법」 상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 탄력세율	
			247.5원/kg (2025. 11. 1. ~ 2026. 4. 30.)	
			206원/kg (2026. 5. 1. ~ 2026. 7. 31.)	
천연가스(LNG)	발전용: 12원/kg	일반 발전용: 12원/kg	10.2원/kg (2025. 12. 31.까지)	
			12원/kg (2026.1.1.~2026.6.30.)	
			10.2원/kg (2026.7.1.~2026.12.31.)	
	열병합 발전용: 8.4원/kg			
	발전용 외: 60원/kg	발전용 외: 42원/kg		
수소제조용: 8.4원/kg				
부산물		90원/L	63원/L	
유연탄		46원/kg	39.1원/kg(2025. 12. 31.까지)	

□ LNG는 LPG 대비 탄소배출 계수 및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낮아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로 볼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5.6%에 이르고 있어 LNG는 가장 보편적인 난방연료라고 할 수 있음.

[LPG 및 LNG 배출계수 현황]

구분	연료	탄소배출계수 (kgC/TJ)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kgCO ₂ /TJ)
석유	프로판(LPG1호)	17,641	64,600
가스	천연가스(LNG)	15,312	56,100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PG)	17,454	64,000

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84.4	85.0	84.7	85.3	85.4	85.7	85.6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 소비자물가지수 중 도시가스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26년 6월 기준 146.10(2020년=100)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119.99 대비 증가율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이에 따른 도시가스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100)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총지수	102.50	107.72	111.59	114.18	116.61	119.99
도시가스	94.64	109.55	133.34	140.12	145.83	146.10

자료: 국가데이터처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 난방용 LNG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LPG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에너지원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과세체계는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뿐만 아니라 용도별 유종간 경쟁·대체관계 등을 고려하

여 결정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이전에는 LNG의 기본세율을 60원/kg로 규정하였으나, 미세먼지 등 과도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유연탄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용 LNG가 오히려 2.5배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에너지원 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¹⁾에 대한 다부처 연구용역¹⁾을 거쳐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율을 60원/kg → 12원/kg으로, 유연탄의 세율을 36원/kg → 46원/kg으로 변경하여 발전용 LNG: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의 비중을 1:2로 조정한 것임.

[2018년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제세부담금 변경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발전용LNG	유연탄	발전용LNG	개정안
국세	개별소비세	60원/kg	36원/kg	12원/kg	46원/kg
	관세	7.2원/kg	무세	좌 동	좌 동
부과금	수입부과금	24.2원/kg	-	3.8원/kg	좌 동
제세부담금 합계		91.4원/kg	36원/kg	23원/kg	46원/kg
제세부담금 비율		(발전용LNG) 2.5 : 1 (유연탄) → (발전용LNG) 1 : 2 (유연탄)			

개정안과 같이 발전용 LNG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원/kg으로 인상될 경우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와 발전량당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유연탄 사용 유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의 취지

1)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5)

를 고려할 때 전체 LNG의 기본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주택난방용 LNG의 기본세율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난방용 LNG와 LPG 사용처, 공급방식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세율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2024년 기준 서울 99.1% 등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 62.6%, 전남 63.3% 등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가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 중 LPG 사용비중은 9%인 반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 중 LPG 사용비중은 3%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또는 중산층 이상 가구가 LNG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음.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행정구역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국	85.4	85.7	85.6
서울특별시	99.1	99.4	99.1
부산광역시	97.0	97.3	97.5
대구광역시	97.5	97.6	96.5
인천광역시	90.4	90.2	89.2
광주광역시	101.1	101.6	102.1
대전광역시	95.5	94.5	95.7
울산광역시	96.9	97.2	98.4
세종특별자치시	71.3	69.9	67.5
경기도	85.5	85.4	84.2
강원특별자치도	60.1	61.5	62.6
충청북도	69.6	70.4	71.6

행정구역별	2022년	2023년	2024년
충청남도	72.7	74.2	75.1
전북특별자치도	74.3	74.4	75.6
전라남도	60.6	62.4	63.3
경상북도	69.0	70.2	71.6
경상남도	77.7	78.6	79.7
제주특별자치도	20.9	19.8	21.5

자료: 국가데이터처

즉, 난방용 LNG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농어촌 지역 및 에너지 취약계층은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08년 서민가계 부담 경감 목적으로 LPG의 개별소비세율을 40원/kg에서 20원/kg로 인하한 바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한 기본세율을 20원/kg으로 조정할 경우 발전용 LNG에 대한 세수는 연평균 1,538억원 증가하고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한 세수는 연평균 1,8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조정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계	△341	△338	△334	△329	△325	△1,666	△333
발전용 LNG분	1,475	1,506	1,538	1,570	1,603	7,692	1,538
주택 난방용 LNG분	△1,816	△1,844	△1,871	△1,899	△1,928	△9,359	△1,872

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4 징수, 차년도에 1/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